

선거관리규정 개정

현행	개정	비고
<p>제 22 조</p> <p>③ 각급 조직대표자의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</p> <p>제 43 조</p> <p>⑤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</p>	<p>제 22 조</p> <p>③ <u>각급 조직대표자의 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 운동원은 위 ①, ②항에 의거 발행한 5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 43 조</p> <p>⑤ <u>입후보자는 위 ③, ④항에 의거 발행한 3종의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, 인터넷,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</u></p>	

부칙 (2014.10.14)

제 1 조 본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